

간이정액환급률표(화학제품)

관세청은 2월28일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면장만 첨부해 환급을 신청하면 HS 10단위 기준의 수출물품별로 책정된 금액을 되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3월1일 수출면허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품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제 품 별	품목수
식료품과 광물성생산물	28
화학·수지·고무제품	213
가죽·목재·제지제품	118
방직용섬유와그제품	445
신발·유리제품	81
금속제품	126
기계류및 전기기기	278
광학기기 및사진용기기	50
잡 품	59

95년까지는 관세청이 전산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상품목을 선정, 환급률표를 작성했으나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품목을 신청받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작성한 것인 만큼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 환급률표에 의해 앞서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마련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르면 95년의 1140개보다 258개가 더 많은 1398개 품목이 고시됐다.

94년에는 1341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았었다. 또 적용기업수는 5564개에서 6100개로 늘어났다.

세부 품목내역을 보면 △섬유류 445개 △전기기기류 278개 △화학·고무류 213개 등 주로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들이다.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지침

1. 적용대상

가. 이 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전년도의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실적을 포함한다)이 1억원이하인 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의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

나. 간이정액환급율표(이하 “간이정액율표”라 한다)적용대상물품의 판정여부는 수출물품의 세번부호(HS10단위)가 수출면허일 등에 시행되는 간이정액율표에 계기된 HS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만 결정하고 품명은 참고로만 한다. 다만 HS 8517.80-9000호는 수출면장 등에 의해 “인터폰”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이 표에 계기된 HS10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가”항에 해당하는 모든 수출물품 등에 간이정액율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간이정액 적용시 제출서류 및 적용방법

가. 이 표의 적용대상물품에 대하여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기관장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세관장(이하 “환급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와 선(기)적등의 사실을 기재한 수출면장 등 세칙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세칙 제5-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래관계 서류

나. 환급액의 결정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미화로 표시된 수출면장등상의 금액 × 수출면허일등에 시행되는 간이정액율표의 간이정액/10

* 이 표의 간이정액은 FOB 기준 미화 10불당 환급액이며 단위는 원임.

다. 나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면장등상의 금액은 환급액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 전가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대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 내국신용장 등에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물품대금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간이정액을 적용할 수출면장등상의 금액(물품대금)을 결정하되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 “적용할 간이정액÷(10×거래일의 과세환율)”은 소수점 네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계산함.

라. 이 표 적용시에는 별도로 환급금 지급제한이나 부산물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3. 적용 제외 및 상계원재료등과의 관계

가. 환급특례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비적용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대로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상계원재료가 포함된 수출물품 등에는 간이정액의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4. 비적용 및 적용신청

가. 이 표에 계기된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비적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세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기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전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청고시 제87-495호, 88-524호, 88-537호, 89-564호, 89-602호, 90-618호, 91-676호, 91-707호) 및 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청고시 제92-714호, 93-771호, 93-793호, 93-843호, 94-860호, 95-915호, 95-956호)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환급기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자는 이 표에 계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도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나 항의 종전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율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환급기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자가 이 표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칙 제7-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서(제7-2호 서식)를 환급기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적용승인으로 개별환급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받은 업체가 다시 비적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5. 행정 지시사항

가. 환급기관장등은 1. 가.에 포함되는 모든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이 표를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 등의 제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제조자가 대기업명부에 계기되어 있지 않으면 세칙 제7-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로 보아 우선 환급을 허용하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환급 후에 세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아 별첨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2) 전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포함)이 1억원이하인지 여부

3)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업체인지 여부(수출물품등의 제조자 기준)

당해 환급기관에서 계속하여 환급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환급기관에서의 비적용 지정 여부를 전산으로 조회하여 확인

나. 비적용신청서를 접수한 환급기관장 등은 다음의 환급액이 이 표를 적용한 환급액 보다 20%이상 많은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실적이 있는 업체는 전년도의 환급실적신고서(별지 1)상의 평균환급액

2) 전년도에 개별환급실적이 없고 금년도에 개별환급실적이 있는 업체는 금년도의 환급실적신고서상의 평균환급액

3) 개별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는 개별환급신청서류에 의하여 산출된 개별환급액

4) 국산원재료를 해외위탁가공 반제품으로 대체하는 등 수입원재료의 관세율이 달라지는 정도의 급격한 원재료 수입구조 변경이 있고 변경된 동 원재료가 장기간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1) 및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호의 규정을 적용한 개별환급액

다. 간이정액적용신청서를 접수한 환급기관 등에서는 신청업체가 비적용승인으로 개별환급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환급기관장 등은 다음양식에 의한 간이정액비적용 및 적용업체명부에 계기된 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

마. 환급기관장 등은 “라”호의 간이정액 비적용 및 적용업체명부에 계기된 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

화학 · 수지 · 고무제품의 간이정액환급률

번호가 환급신청(기납증발급 포함)시에 제출한 수출면장등상의 기재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의거 동일업체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등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간이정액환급비적용 및 적용신청서를 접수한 환급기관 등에서는 당해요건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없이 전산을 입력하고 다음 양식에 의한 간이정액비적용 및 적용업체 명부를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사. 환급기관장등은 이 표 시행에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세청(전화 512-2303)에 문의 또는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